

의안번호	제2958호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

의결 사항	
----------	--

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발의자	우정욱 의원 등 6인
발의연월일	2025. 6. 27.

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(우정욱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95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6. 27.

발 의 자: 우정욱, 최두임, 김향숙,

정영환, 김원순, 이정숙 의원(6인)

1. 개정이유

-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무과장 및 기획행정전문위원·의회운영전문위원의 직렬을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고성군의회 사무과장 직렬 조정 (안 제2조)
 - 당초 지방행정사무관 ⇒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농업사무관·지방시설사무관
- 고성군의회 기획행정·의회운영전문위원 직렬 조정 (안 별표)
 - 당초 지방행정사무관 ⇒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사회복지사무관
 - 당초 지방행정주사 ⇒ 지방행정주사·지방농업(시설)주사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03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)
 - 「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」 제1조
-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-30호
 - 예고기간: 2025. 6. 27.(금) ~ 7. 3. [6일간]
 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4. 본 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규칙 제 호

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지방행정사무관”을 “지방행정사무관·지방농업사무관·지방시설사무관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사무과장) ①사무과장은 <u>지</u> <u>방행정사무관</u> 으로 보한다.	제2조(사무과장) ①----- <u>지방</u> <u>행정사무관·지방농업사무관·지</u> <u>방시설사무관</u>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■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[별표] **(현 행)**

전문위원별직급(제3조 관련)

위원회명	직 위	직 급
기획행정위원회	기획행정전문위원	지방행정사무관
산업경제위원회	산업경제전문위원	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(시설)사무관
의회운영위원회	의회운영전문위원	지방행정주사

■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[별표] **(개정안)** <2025. 00. 00.>

전문위원별직급(제3조 관련)

위원회명	직 위	직 급
기획행정위원회	기획행정전문위원	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
산업경제위원회	산업경제전문위원	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(시설)사무관
의회운영위원회	의회운영전문위원	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(시설)주사

별첨**관계법령(발췌)****□ 지방자치법**

제103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)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·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
□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」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